

뉴저지장로교회 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위치)

이 규정은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장로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규정이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교회 인사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고 훌륭한 신앙인격을 갖춘 전문인을 임용하고, 임면에 있어 공정을 기하며, 본 교회 근무기간 중 맡은 바 소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히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범위)

이 규정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헌법을 모법으로 하며, 본 교회의 타 규정보다 우선하고, 인사에 관계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당회가 관장한다. 단,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 장 직 원

제 4 조 (대상)

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직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 자원봉사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가. 교역자

- 1) 담임목사: 위임목사
- 2) 임시목사: 상회 파송 임시목사
- 3) 부목사: 행정목사, 교육목사, 교구목사, 심방목사, 음악목사, 전도목사(선교사), 특수전도목사(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기타 본 교회 파송 등)
- 4) 전도사: 심방, 교회학교 전도사 등

나. 일반직

- 1) 사무장
- 2) 간사
- 3) 관리
- 4) 운전기사
- 5) 컴퓨터 프로그래머

- 6) 각급 보조직
 - 7) 기타
- 다. 전문직
- 1) 지휘자
 - 2) 반주자
 - 3) 독창자
 - 4) 교회학교 유급교사
 - 5) 본 교회 부설기관(유치원, 한국학교, 방과후 학교, 여름학교, 베전경로대학 등) 종사자
 - 6) 기타

제 5 조 (직원의 구분)

본 교회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풀타임 직원: 1주에 40 시간 이상으로 1년에 50 주 이상 근무하는 자
- 나. 하프타임 직원: 1주에 20 시간 이상 40 시간 이하 근무하는 자로 사례비와 보험 외 다른 Benefit이 없이 근무하는 자
- 다. 파트타임 직원: 1주에 20 시간 미만으로 1년에 1,000 시간 이하 근무하는 자
- 라. 임시직원: 임시로 채용된 자

제 3 장 직원의 자격

제 6 조 (직원의 자격)

본 교회 직종별 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목사
- 1) 해외한인장로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본 교단에 소속되었거나 가입이 가능한 자
 - 2)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3 조 (목사의 자격)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단, 영어 및 스페니쉬 목회자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¹ (헌법 제 23 조 목사의 자격)

- 가. 목사의 자격
- 1) 장로회 정규 신학대학과 본 종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
 - 2) 종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 3)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중 1년 이상 교역경험과 졸업 후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 4) 무흠한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 5) 27 세이상 된 남자.
 - 6) 신앙이 진실한 자.
 - 7)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 8) 신체가 건강한 자.
 - 9)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3)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단,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청빙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전도사

1)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제 2 편(정치) 제 7 장(목사) 제 23 조(전도사, 서리집사) 47 조(전도사의 자격)²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단,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2)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단,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청빙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일반직

1) 무흠 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한 자

2) 해당 직종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

3) 유학생이거나 미국 영주권, 시민권, 또는 취득이 가능한 자

제 4 장 채용의 절차

제 7 조 (채용의 원칙)

모든 직원은 미국법(연방법, 주법 등)에 의한 기회균등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채용한다. 따라서 인종, 성별, 연령, 결혼, 핸디캡, 가족사항 등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채용의 절차는 본 규정 제 8 조(모집공고)부터 제 12 조(임용공고)까지로 한다. 단, 일반직과 전문직은 본 규정 제 18 조(시용기간)에 의거 시용기간을 둔다.

제 8 조 (모집공고)

당회에서 고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소한 임용 1개월 전에 주보, 본 교회 웹 사이트(<https://www.kpcnj.org>), 미주 발행 주요 일간지 및 기타 매스컴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서류접수)

청빙에 응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정한 기일(도착일 기준)까지 본 교회 인사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목사 및 전도사

1) 이력서(Resume-소정양식 서식 #001, 웹사이트 Down 가능) 1부

2) 신앙고백서(Statement of Faith) 1부

3)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1부

4) 학위증명서(Certificate of Graduation) 1부 (단, 전도사는 재학증명서 1부)

10)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11) 외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

² (헌법 제 47 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신학교 재학생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로서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단, 시무장로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다.

- 5) 안수증명서(Certificate of Ordination) 1 부 (단, 전도사는 노회 고시합격증 1 부)
 - 6) 최근 설교 테이프(VHS, 카세트 또는 CD) 1 편 (필수 이중언어 구사자는 한국어 및 해당 외국어 각각 1 편씩 제출)
 - 7) 영주권, 시민권 또는 미국비자 사본 1 부
 - 8) 추천서 2 통
 - 9) 최근 개인사진 및 가족사진 각 1 매씩
 - 10) 기타 당회 및 청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나. 일반직 및 전문직
- 1) 이력서(Resume-소정양식 서식 #001, 웹사이트 Down 가능) 1 부
 - 2) 수세증명서 또는 이명증명서 1 부
 - 3) 신앙고백서(Statement of Faith) 1 부
 - 4)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1 부
 - 5) 학위증명서(Certificate of Graduation) 또는 재학증명서 1 부
 - 6) 해당 직종 경력증명서 및 면허증 사본 1 부
 - 7) 영주권, 시민권 또는 미국비자 사본 1 부
 - 8) 최근 본인 사진 및 가족사진 각 1 매씩
 - 9) 기타 당회 및 청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 5 장 인사위원회 - 청빙위원회

제 13 조 (조직)

인사위원회와 청빙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은 1년직으로 당회장 목사(당연직), 시무장로 중 3인을 매년 정기 기회당회에서 임명하고 해당 부서장 1인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임명한다. 인사위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청빙위원회: 청빙위원은 당회에서 임명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당회에서 정한다.

제 14 조 (필수사항)

담임목사 청빙은 필히 청빙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당회에 추천한다.

제 15 조 (부서)

청빙위원회의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서기 등을 둘 수 있다.

제 16 조 (임무)

- 가. 인사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 본 교회 인사행정을 포괄적으로 관掌한다.
- 나. 청빙위원회는 본 규정 제 14 조(필수사항) 외에 당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당회의 위임사항을 수행한다. 해당지 공모에 지원자가 복수일 경우, 청빙위원회는 청빙에 응한 자들의 서류심사, 설교 테이프 청취 등을 행한다.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면접이나 초청 설교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작성 제출한 개인별, 지원자별 평점표(서식#002)의 고득점자 순으로 당회에 품신한다. 청빙업무의 완료와 동시에 청빙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제 6 장 임용교육 및 시용기간

제 17 조 (오리엔테이션)

신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당회장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근무수칙을 오리엔테이션 한다.

- 가. 근무시간
- 나. 휴가
- 다. 공휴일
- 라. 의료보험
- 마. 세금
- 바. 지시 및 명령계통
- 사. 업무내용
- 아. 급여내용
- 자. 본 규정의 숙지
- 차. 기타

제 18 조 (시용기간)

교역자를 제외한 일반직 및 전문직으로 신규 임용된 자는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어 임시직으로 근무하여 소정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위원장 경유 당회에 보고, 정식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시용기간이라도 정한 사례금은 100% 지급되며, 이 기간도 차후 임용기간에 합산한다.

- 가. 믿음과 덕이 있는 생활을 하는가?
- 나. 상부의 지시에 잘 순종하는가?
- 다. 동료직원과 상부상조 하는가?
- 라. 맡은 바 직무에 능하며 충실한가?
- 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는가?
- 바.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가?

제 19 조(근무 의무 기한)

임시직을 제외한 풀타임 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필히 당회(인사위원회) 근무평가를 거쳐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자는 근무 중이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중도 사임시킬 수 있다.

제 20 조 (부목사, 전도사의 임기)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며(헌법 제 25 조 3 항 ‘목사의 칭호’)³,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를 시무하는 교역자이다. (헌법 제 46 조 ‘전도사의 직무’)⁴. 따라서 부목사와 전도사는 1년 임시직으로 하며, 매년 정기 기획당회에서 그 연속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단, 그 치리권은 당회에 있으나(헌법 제 49 조 ‘치리회의 구분’)⁵, 필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경유 당회에 품신되어야 하며, 임용서약을 위약했거나 본 규정 제 47 조(사임), 제 48 조 (권고사직), 제 49 조(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의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수 없다.

제 7 장 근무요령

제 21 조 (근무시간)

풀타임 교역자 및 일반직 직원은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며, 직원조회에 필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 22 조 (안식년)

위임 및 담임목사는 시무 6년 경과 후 1년의 안식년으로 유급 휴직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누적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3 조 (휴무)

풀타임 교역자 및 일반직 직원은 주 1회(매주 월요일) 유급으로 휴무 한다. 단, 순번에 의하여 매 월요일 오클랜드 1명, 본당 1명씩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 24 조 (파트타임)

전문직 직원은 파트타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 조 (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가. 신년(New Year)
- 나. 현충일(Memorial Day)
- 다.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 라. 노동절(Labor Day)
- 마.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³ (헌법 제 25 조 3 항)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 이다.

⁴ (헌법 제 46 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를 시무하는 유급교역자이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협력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⁵ (헌법 제 49 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바. 성탄절(Christmas)

제 26 조 (휴가)

풀타임 교역자 및 일반직에 대한 근무 연수별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휴가기간 중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휴가일을 1일 추가 한다.

- 가. 만 1년 이상: 1주
- 나. 만 2년이상, 5년 미만: 2주
- 다. 만 5년 이상: 3주
- 라. 연구휴가(Study Leave): 1주

제 27 조 (개인출타)

직원의 개인출타는 본 규정 제 26 조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소속 부서장, 인사위원회 경유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초과일은 2주 이내로 한다.

제 28 조 (계속수학)

본 교회에 5년 이상 시무한 풀타임 교역자가 학위취득,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각계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계속 수학코자 하는 자는 등록시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경유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29 조 (휴가의 소멸)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는 누적 적용되지 않으며, 자연 소멸된다.

제 30 조 (휴가신청)

휴가는 4주 전에 소속 부서장 경유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보에 게재하는 등 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출산휴가)

교역자, 일반직 근무자 중 본인이 임신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정규휴가 및 병가 외에 2개월간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취할 수 있다.

제 32 조 (병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통산 7일 이내,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통산 14일 이내의 유급 병가를 줄 수 있다.

제 33 조 (경조휴가)

경조사의 특별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 가. 직계 존비속의 사망 시 1주
- 나. 형제, 자매 등 근친의 사망 시 3일

- 다.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시 3일
- 라. 형제, 자매 등 근친의 결혼 시 1일

제 34 조 (미국 정부 출두)

미국법에 의거 법원 배심원으로 소집되는 등 미국 정부 기관의 출두에 의한 결근은 유급으로 한다.

제 8 장 사례

제 35 조 (사례금 지급일)

직원의 사례금은 월급으로 하고 매월 첫째주에 지급한다.

제 36 조 (지급액)

사례액의 조정은 매년 예산위원회가 초안한 예산안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제직회)가 집행한다.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년 3%씩 인상하되 교회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37 조 (기타 제공)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풀타임 교역자에게는 정액 사례금 외에 주택,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등 그 운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중근무)

한 사역자 및 사례자의 다중근무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여 2종, 3종의 근무를 명 받은 경우에도 사례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당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9 조 (상여금 및 출장 및 연수경비)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상여금이나 출장 및 연수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추경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40 조 (퇴직금)

재정에 관한 규칙 제 52조, 제 53조항을 따른다.

제 41 조 (원로목사 우대)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5조 (목사의 칭호) 제 8 항⁶에 의거 원로목사로 추대된 자의 사례는 당회 결정에 따라 매월 또는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다.

⁶ (헌법 제 25 조 8 항)

제 42 조 (전별금)

재정규칙 복리후생 제 4조항을 따른다.

제 43 조 (보험가입)

풀타임 교역자 및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며 그 보험료는 교회에서 부담한다.

제 44 조 (Social Security)

교역자는 Self-Employee로 간주되므로, 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며, 풀타임 일반직은 법에 의거하여 교회와 본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10 장 해 임

제 45 조 (사임)

사임을 원하는 직원은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장 경유 당회장에게 사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 (권고사직)

당회는 기구 조정으로 인한 교회의 업무량이 감소될 경우, 인사위원회장을 통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을 권유하거나 감원을 통보할 수 있다.

제 47 조 (해고)

당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 가. 부목사 및 전도사의 계속 근무를 기획당회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본 교회 교리를 떠나 이단 종교에 가입한 경우
- 다. 업무수행 능력이 무능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
- 라.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마. 성경과 교회의 장정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 바. 기타 당회에서 면직 결정을 내린 자

제 11 장 부 칙

제 1 조 (미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당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한다.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이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봉급을 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효력)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제 3 조 (수정)

이 규정이 정기 기획당회에서 수정될 경우, 수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차

2017년 5월 14일, 제 561 차 2017년 5월 당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교단이름 변경: 미주한인장로회에서 해외한인장로회로 변경하다.

제 19 조(근무 의무 기한)

개정 전: 임시직을 제외한 풀타임 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상 필히 시무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의 허락으로 중도사임할 수 있다.

개정 후: **임시직을 제외한 풀타임 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필히 당회(인사위원회)**

근무평가를 거쳐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자는 근무 중이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중도사임시킬 수 있다.

제 40 조(퇴직금)

개정 전: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단, 해고된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풀타임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최종 급여(본봉)으로 1년 근무에 1개월의 사례비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풀타임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별도로 당회에서 책정하여 지급한다. 에서 개정

개정 후: **재정규칙 복리후생 제 3 조항을 따른다.**

제 42 조(전별금)

개정 전: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으로 만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임할 경우, 퇴임 전별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 해고된 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3년 이상 근무한 자: 최종 월급액의 20%

나. 5년 이상 근무한 자: 최종 월급액의 50%

다. 7년 이상 근무한 자: 최종 월급액의 100%

개정 후: **재정규칙 복리후생 제 4조항을 따른다.**

개정: 2차

2021년 2월 14일, 2021년 2월 정기당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2 장, 제 4 조, 나. 일반직 2)항

개정 전: 2) 비서

개정 후: 2) 간사

2) 제 2장, 제 4조, 다. 전문직 5)항

개정 전: 5) 본 교회 부설기관(유치원, 한국학교, 영어학교, 상조회, 베전경로대학 등) 종사자

개정 후: 5) 본 교회 부설기관(유치원, 한국학교, 방과후 학교, 여름학교, 베전경로대학 등) 종사자

3) 제 3장, 제 6조, 다. 일반직

개정 전: 해당 직종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단, 사무장과 비서는 컴퓨터 워드 - 프로세스 운용이 가능한 자)

개정 후: 해당 직종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단, 사무장과 간사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 운용이 가능한 자)

4) 제 8장, 제 36 조(지급액)

개정 전: 사례액의 조정은 매년 예산위원회가 초안한 예산안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제직회)가 집행한다.

개정 후: 사례액의 조정은 매년 예산위원회가 초안한 예산안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제직회)가 집행한다.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년 3%씩 인상하되 교회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5) 제 8장, 제 40 조(퇴직금)

개정 전: 재정규칙 복리후생 제 3조항을 따른다

개정 후: 재정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항을 따른다.